

기후-통상 정책의 새로운 연계: 그린경제협정의 확산과 시사점

이주관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e@kiep.go.kr, 044-414-1089)

박지현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jhpark@kiep.go.kr, 044-414-1136)

김민성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044-414-1113)

차 례

1. 도입
2. 양자 간 그린경제협정 사례와 주요 내용
3.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추진을 위한 시사점

부록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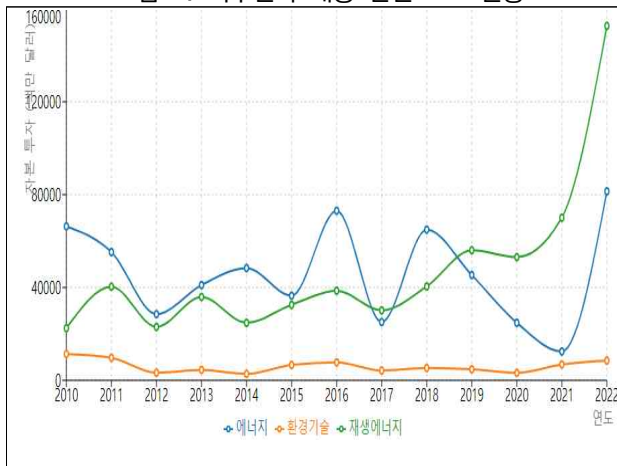
- ▶ 무역과 기후 정책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린경제협정이 확산되고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이 기후와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기후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는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과 '국제협력'이라는 두 방향으로 구체화됨.
 - 그린경제협정은 기후-통상 정책의 협력적 연계가 강조되는 분야별 협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통상협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 관련 다자무역 질서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원, 시장, 협력 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음.
- ▶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 환경 챕터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등장하며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협력과 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는 특징이 발견됨.
 - 그린경제협정은 기존 FTA 환경 챕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로 파리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규제 조화와 상호 인증, 보조금 이슈, 금융지원, 탄소세 및 탄소가격제의 조화, 국제감축 요소를 새롭게 다루며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중심의 포괄적 통상협정과 차별화된 분야별 협정의 특징을 보여줌.
 - 시장 개방보다 협력 관련 조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협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 연계, 기금 마련, 민간참여 확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역제재 등 다양한 장치들이 도입됨.
- ▶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에 특화된 협정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협정에서는 탄소감축 협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다루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강조됨.
 - 파리협정 6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을 위한 협정은 감축실적 확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개도국)의 저탄소성장 달성을 위한 저탄소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등의 투자와 교류 확산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국제사회에서 기후-통상 협정이 진화하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의 기후통상정책을 설계해야 함.
 - 그린경제협정의 요소가 폭넓은 점을 고려하여 그린전환에 대한 민간수요와 정책적 수요에 맞게 구성요소를 선별·모듈화하여,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정 중심의 통상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에 주목하고,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항목별 이니셔티브 개발과 대응이 필요함.
 -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무역과 투자 촉진, 경제성장을 모두 포괄한 협력활동을 고려하여 그린전환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함.

1. 도입

■ [그린전환의 주류화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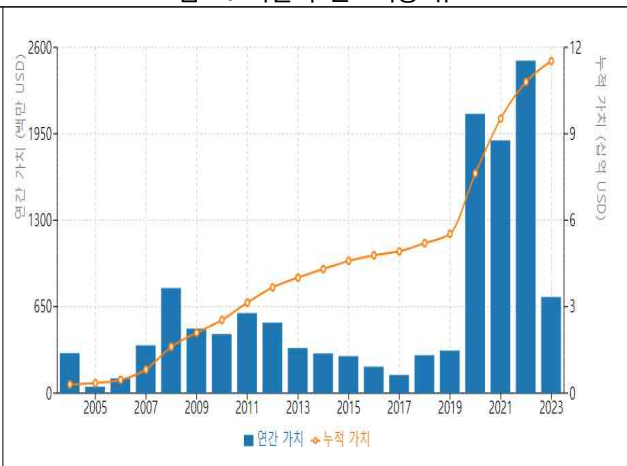
- 세계적으로 저탄소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FDI Markets 해외직접투자(FD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진 7개국(G7)과 한국의 환경 분야 투자는 2015년 이후 연평균 12%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¹⁾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3년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액이 1.8조 달러에 달해 화석연료 투자액(1조 달러)을 크게 상회한다고 밝힘.²⁾
- 기후기술 공동개발, 해외 청정에너지 자원 개발 및 확보를 위한 국경 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활용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이 성장추세를 보임.
 - Ecosystem Marketplace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의 거래량은 2020년 1억 8,800만 톤에서 2021년 3억 6,200만 톤으로 약 92% 증가했으며, 거래액은 4억 7,3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111% 증가했음.³⁾
- 국경 간 그린경제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탄소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기후통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

그림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FDI 현황



자료: FDI Markets.com.

그림 2.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자료: Ecosystem Marketplace.

■ [통상환경의 변화 속 새로운 통상전략] 경제적 이익 중심의 FTA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염두에 둔 균형 잡힌 통상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전통적 FTA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관세 철폐와 양허, 비관세장벽 등 시장개방에 대한 경제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1) FDI market data를 이용해 저자 작성(검색일: 2023. 10. 1.).

2) <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investment-2023/overview-and-key-findings>(검색일: 2024. 7. 31.).

3) <https://www.ecosystemmarketplace.com/publications/2024-state-of-the-voluntary-carbon-markets-sovcn/>(검색일: 2024. 7. 31.).

- 시장개방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발해 수입국, 특히 선진국의 일자리 감소 및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함에 따라⁴⁾ 무역협정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강조됨.
- 지정학적·지경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신뢰 구축이 중요해지고, 이는 그린 전환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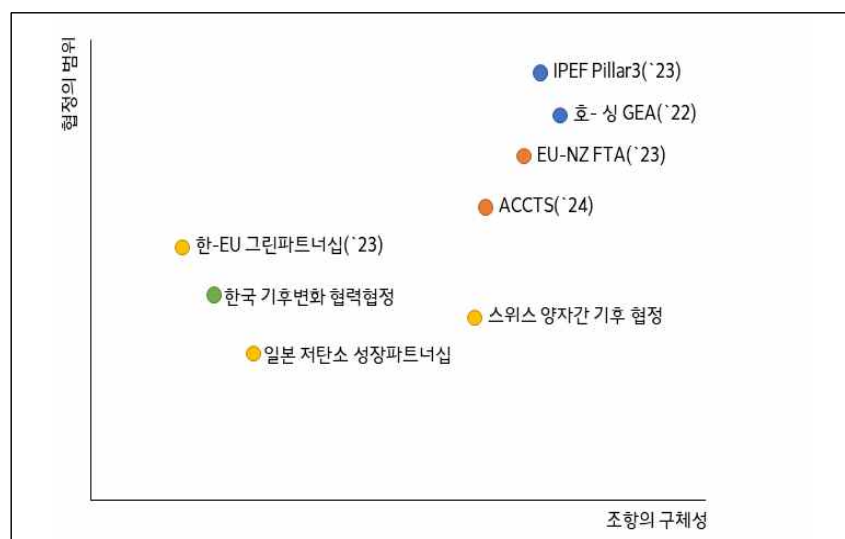
■ [기후통상 연계 병행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주의’와 ‘협력’이라는 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표적으로 탄소중립 가속화와 함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으로서 관련 산업과 무역 질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변국으로 유사한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싱가포르-호주 간 그린경제협정 체결('22. 10.), G7 중심의 기후클럽 창설('23. 12.),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협정 타결('23. 11.), 뉴질랜드-스위스-코스타리카-아이슬란드 간 기후변화·무역·지속가능성에 대한 협정 타결(ACCTS)('24. 7.) 등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전환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주요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

■ [그린경제협정의 정의] 그린경제협정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력 체계로 정의할 수 있음.

- 그린경제협정은 통상협상을 통해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국경 간 활동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고 규범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통상 협력관계 구축을 의도하는 새로운 협정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림 3. 기후-통상 협력의 확산



자료: 저자 작성.

4) Autor, Dron, and Hanson(2013),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이 대표적인 연구임.

- 그린경제협정은 시장개방 중심의 포괄적 FTA 체결이 정제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접근이자, 그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들의 통상협력 확대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린경제협정의 형태] 구속력이 없는 MOU에서부터 협력을 약속하는 파트너십, FTA를 활용한 기후변화와 통상정책의 연계, 나아가 독립적 형태의 기후통상조약으로 진화하고 있음.

- [양자 간 FTA] 전통적으로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해온 EU는 FTA를 체결·개정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최근 체결된 EU-뉴질랜드 FTA에 반영함.
- [양자 간 독립형] FTA를 기반으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촉진, 표준과 관련된 기후-통상 정책 간 조화와 협력 채널을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형태의 환경 관련 통상협정은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임.
- [복수국 간 협력형] 미국은 시장개방보다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의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복수국 간 협정을 주도하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Pillar 3 청정경제협정 체결을 주도함.
- [복수국 간 독립형] 지난 6월에는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4개국 간 ‘기후변화와 무역에 관한 협정(ACCT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Trade and Sustainability)’이 체결되면서 기후-통상 협정의 다자화 노력이 관심국을 중심으로 결실을 맺음.

■ [한국의 대응 현황] 한국 역시 기후-통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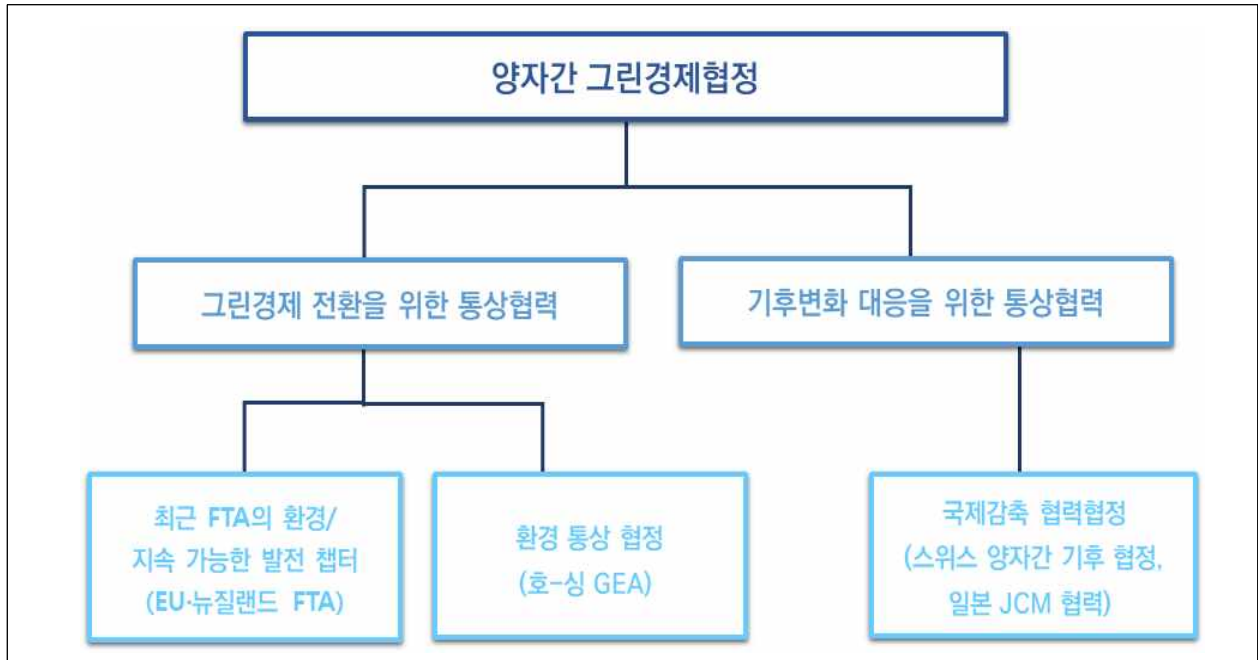
- 한국은 베트남(2021. 5.)을 시작으로 몽골(2023. 2.), 가봉(2023. 5.)에서 최근의 페루(2024. 6.)에 이르기 까지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파리협정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복수국 간 협력 측면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에 참여하여 청정경제 챗터에(2023. 11.) 합의하였고, G7 주도의 기후클럽 가입을 선언함(2023. 5.).
- 최근 한-중 FTA 개정, 한-영 FTA 개선 논의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경제 협력 강화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체결된 주요 양자 간 그린경제협정의 체결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한국은 그린경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하는 상황인바, 이하에서는 양자 간 협정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협정을 분석하고자 함.
- 대표적인 협정인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 EU-뉴질랜드 FTA의 확장된 FTA 환경 챗터, 스위스의 파리협정에 대한 이행협정, 일본의 공동감축메커니즘(JCM) 등을 한국이 추진 중인 기후변화 협력협정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양자 간 그린경제협정 사례와 주요 내용

그림 4. 양자 간 그린경제협정의 분류



자료: 저자 작성.

- 본 장에서 대표적인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협력협정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함.
- 양자 간 그린경제협정은 그 목적에 따라 △그린경제로의 전환과정에 필요한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경간 노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협정과 △기후변화 대응,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은 현재 양자 간 기후변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기후변화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논의와의 비교를 통해 수렴해가는 부분과 차이 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한편, 해당 협정이 포괄적인 그린경제협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함.

가.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통상협력

- 본 절에는 무역, 경제와 환경을 통합하여 체결된 최초의 협정인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과 최신의 FTA인 EU-뉴질랜드 FTA 내 환경 챕터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기본협정⁵⁾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5) 가장 최근에 협의된 한-페루 간 협정문은 미공개 상태이며, 한-몽골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내용이 표준문안에 가까우므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함.

1)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GEA: Green Economy Agreement)

■ 호-싱 GEA는 무역, 경제 및 환경 목표를 통합하고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협정으로, 2022년 10월에 발효됨.

- 호-싱 GEA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에 대한 호주-싱가포르 총리 공동선언문과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SAFTA: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을 토대로 구축됨.
- 호-싱 GEA는 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투자 및 교역 촉진, 새로운 그린성장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운용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그린경제 관련 기술 개발과 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공동 규제와 표준을 육성하려는 목적이 있음. ⁶⁾
- 호-싱 GEA의 기대 효과로는 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 및 관련 수출업자에 대한 규제 부담과 운영 비용 감축, 그린성장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지원, 그린기술의 개발과 상업화 촉진 등이 언급됨.⁷⁾

■ 호-싱 GEA는 비전과 목표, 그린경제 협력의 원칙, 7개 우선순위 협력 분야와 17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됨.

- 호-싱 GEA는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관련 과제 해결방법 모색,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 개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및 상업적 기회 지원, 기술 규제·표준·적합성 평가 절차의 수렴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함.
- 호-싱 GEA는 다자·지역·양자 협정 등에서 의무이행을 재확인하고, 환경 관련 데이터 구축과 증거 기반 분석의 도입, 기술 규제·표준의 조율, 관련 정보 및 전문지식 공유, 민간부문의 참여 등을 협력 원칙으로 제시함.
- 7개의 우선순위 협력 분야는 ① 무역과 투자, ② 표준과 적합성, ③ 그린 및 전환 금융(Green and Transition Finance), ④ 탄소시장, ⑤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및 기술, ⑥ 친환경 성장을 위한 기술과 역량, ⑦ 참여와 파트너십임.
- 협정문에는 분야별 협력 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록(annex)에서 17개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함.

■ 부속서(appendix)는 협정의 거버넌스 구조, 이행 및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으로, 호-싱 GEA 이행을 위한 별도의 팀을 설립하여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싱 GEA가 양국 간 또는 제3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호-싱 GEA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력과 관련된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공동 이행팀인 GEA Action Team(GAT)을 설립함.
 - GAT는 양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CSP하의 싱가포르-호주 공동각료위원회 회의(SAJMC: Singapore-Australia Joint Ministerial Committee Meeting)와 고위급 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함.

6) Singapore Australia Green Economy Agreement, <https://www.gea.gov.sg/sagea/>(검색일: 2023. 1. 25.).

7) *Ibid.*

- 호-싱 GEA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상호 이해의 기록(record of Australia's and Singapore's understanding)을 위한 기본협정으로서 양국 간 또는 제3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분쟁은 국제법원, 재판소 또는 기타 포럼에 회부하지 않고 양국 간 선의의 협의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함.

2) EU-뉴질랜드 FTA⁸⁾

■ 2022년 6월 협상이 타결된 EU-뉴질랜드 FTA는 경제적인 목적 외에 EU의 환경과 정의로운 성장을 위한 무역협정 접근법에 따라 EU가 체결한 첫 번째 무역협정으로, 협정 이행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무역제재를 포함한 의무 이행 부과 등이 기존 FTA와는 차별화된 요소임.⁹⁾

- 2022년 발표된 환경과 정의로운 성장을 위한 무역협정 접근법(Trade Agreements for Green and Just Growth approach)은 EU의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할 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 활동을 식별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협정 이행 강화 등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됨.¹⁰⁾
 - 특히 협정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리기후협약과 ILO 기본노동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무역 제재 부과를 허용함.¹¹⁾

■ 본 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는 파리협정의 효율적인 이행과 탄소가격 결정을 포함한 기후 관련 문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협력을 약속하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상품과 같은 환경 상품 및 서비스를 무세화한 것이 특징임.¹²⁾

- 이 외에도 교역과 관련된 식물의 다양성, 산림, 수산업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에 대한 협력과 약속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는 다자환경협정 및 파리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무역 관련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에 대한 협력,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작성과 교역 촉진활동, 별도의 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챕터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경제, 사회적 발전, 환경보호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화 및 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회원국 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특히 환경 및 사회적 차원(특히 노동 측면)의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함.
- 특히 본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리협정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 약속,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국제 탄소시

8) 본 협정에서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19장(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제13장(에너지 및 원자재)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9) European Commission(2022), "Together for Green and Just Growth Sustainability in the EU-Newzealand Trade Agreement."

10) European Commission(2022), "Commission unveils new approach to trade agreements to promote green and just growth."

11) *Ibid*.

12) European Commission(2022), "Key elements of the EU-New Zealand trade agreement,"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key-elements-eu-new-zealand-trade-agreement-2022-06-30_en(검색일: 2024. 1. 31.).

장 개발 촉진, 국내 및 국제 탄소가격제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정책 및 기술 교환,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작성과 무관세화,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등은 기존에 EU가 체결한 FTA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내용임.

- 무역 및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챕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사국 간 의사소통과 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접촉 창구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교환하기로 함.
 -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전문 위원회 중 하나로, 그 기능은 ① 피제소국으로 패널 최종 보고서의 판결과 권고 사항의 이행조치 실행 모니터링, ② 국내 자문 그룹¹³⁾과의 논의를 위한 주제를 포함하여 본 챕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작업 지원, ③ 당사국 간에 합의된 본 장과 관련된 기타 관련 문제 고려 등임.
 - 무역 및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각 회의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본 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중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에너지 및 원자재 챕터는 수출입 독과점 제한, 수출 및 국내 가격 책정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금지, 탐사 및 생산 허가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인프라의 비차별적 접근 보장,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기술 관련 공통 표준에 대한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에너지 및 원자재 챕터는 무역 및 투자 촉진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발전과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고, 원자재의 지속가능한 생산, 개발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시장 접근과 공정 경쟁에 관하여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출입독점권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수출가격의 공정성을 부과하기 위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부과할 수 없으며, 국내 가격의 경우 전기 에너지 및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실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에너지 상품 및 원자재의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허가 절차, 허가 후 신청인에 대한 재정적 기여금 요구 허용, 허가 거부 시 신청인의 항소 및 검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에너지나 원자재의 생산과 관련된 활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자국 영토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비용을 반영한 조건으로 전기 송전 및 배전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도록 보장함.
- 이 외에도 △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협력, △ 연구, 개발 및 혁신, △에너지 상품 및 원자재 관련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협력 촉진과 관련 이니셔티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적권을 보호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에서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관행과 기술에 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보급,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함.
 - 에너지 상품 및 원자재와 관련되어 영향을 주는 제3국의 무역 및 투자 왜곡조치 감소, 국제 프로그램 육성, 시장 데이터 교환 촉진,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혁신 및 훈련,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우수 사례 육성 등의 협력활동을 제시함.

13) 제24.6조(국내 자문 그룹)에서는 경제,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환경 및 기타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비정부 기관, 기업 및 고용주 단체,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국내 자문 그룹을 설립하여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과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U-뉴질랜드 FTA는 협력 기반 접근 방식과 함께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협정의 핵심 약속 중 하나인 '파리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무역협정'으로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¹⁴⁾

-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는 분쟁 발생 시 일반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다자협정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협의에서 당사국의 업무와 관련 국제기관 간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 국제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자문을 고려하도록 하고, 적절할 경우 국내 자문 그룹의 견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함.

3) 한-몽골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한-몽골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목적, 협력분야, 협력활동,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설립,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6월에 발효됨.

- 본 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또는 제거와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된 협력활동을 통해 상호 유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협정은 협력 분야와 이를 위한 협력활동,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협정 이행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 년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계획 승인, 협력활동 이행의 진전 등에 대해 논의함.
 -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 등에 관한 공동 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공동 소위원회는 감축 결과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도록 제4조에 따른 자발적 협력을 위한 규칙과 양식을 결정하고 합의함.
- 기업, 투자자, 연구 기관, 대학 및 사회단체 간 협력과 함께 이러한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함.

4) 협정 간 비교 분석

■ 앞서 살펴본 3개의 협정을 비교 분석해 보면 목적에 따른 주요 구성요소, 이행 방식, 분쟁 해결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임.

■ [목적] 호주-싱가포르 GEA와 EU-뉴질랜드 FTA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적인 분야와 환경보호를 연계한 협력이 중심이나,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환경 부문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호주-싱가포르 GEA는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과 민간 부문, 교역과 투자, 환경을 고려한 협력을

14) European Commission(2022), "Key elements of the EU-New Zealand trade agreement,"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key-elements-eu-new-zealand-trade-agreement-2022-06-30_en\(검색일: 2024. 1. 31.\)](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key-elements-eu-new-zealand-trade-agreement-2022-06-30_en(검색일: 2024. 1. 31.)).

강조하고 있으며, EU-뉴질랜드 FT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역과 투자에 환경, 사회적 측면(특히 노동)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반면 한국-몽골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이 목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협력에 국한되어 있음.

■ [구성요소] 3개의 협정 모두 공통적으로 '파리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환경 측면에서의 협력으로 제한된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비해 호주-싱가포르 GEA와 EU-뉴질랜드 FTA의 협력 범위는 교역 및 투자에서 민간 부문까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임.

- 호주-싱가포르 GEA는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작성,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 국제 표준의 채택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상호 인정, 그린금융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및 금융 솔루션 제시, 국제 탄소시장의 개발 지원, 국가 간 전력 교역을 위한 인프라 개발 등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인력 개발 및 역량 강화,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등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함.
 -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경제에서 고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싱가포르 그린위원회 설립, 양국의 그린경제와 관련된 기업 간의 매칭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싱가포르-호주 Go-Green Co Innovation Program 및 MOU 체결 등의 추진 이니셔티브를 제시함.
- EU-뉴질랜드 FTA는 배출권 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국제 탄소시장의 개발 촉진, 국내외 탄소 가격제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정책 및 기술 교환,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상품 목록 작성, 관련 장벽 제거,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등 기존 FTA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됨.
- 한-몽골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과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NDC 기여를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 진흥 등 파리협정 6조에 규정된 자발적 협력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공동 소위원회를 설립하여 감축 결과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 협정 제4조에 따른 자발적 협력을 위한 규칙과 양식을 결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행 방식] 3개의 협정 모두 이행 관련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비해 호-싱 GEA와 EU-뉴질랜드 FTA에서는 이행 동력이나 투명성이 더 강화됨.

- 호-싱 GEA는 별도의 이행팀을 설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고위급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협력 분야별로 추진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진전 사항을 공개하여 이행 동력과 투명성을 확보함.
 - 협정 발효 후 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17개 이니셔티브별 이행 진전 사항을 1년마다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음.
- EU-뉴질랜드 FTA는 전체 협정의 이행,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무역위원회 외에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각 회의 후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대중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 또한 국내 자문 그룹 회의를 최소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하여 협정 이행에 대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당사국은 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매년 위원회가 개최되기는 하나 논의 사항이나 진전 사항에 대한 공개나 별도의 추진 이니셔티브는 없음.
- [분쟁해결] 분쟁 발생 시 호-싱 GEA,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반면 EU-뉴질랜드 FTA는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EU-뉴질랜드 FTA의 경우 이행 강화를 위한 투명성 요건과 심각한 위반 시 무역 제재 부과가 허용됨.
- 호주-싱가포르 GEA는 협정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조약으로서 호주-싱가포르 GEA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EU-뉴질랜드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며,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는 패널 판정 결과와 권고 사항 관련 이행조치의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국내 자문 그룹은 이와 관련된 의견(observations)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 더불어 다자협정과 관련된 분쟁의 협의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나 조언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내 자문 그룹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EU-뉴질랜드 FTA에서는 파리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가 발생할 경우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함.

표 1. 호주-싱가포르 GEA, EU-뉴질랜드 FTA,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비교

분야	세부 구성 요소	호-싱	EU-뉴	한-몽
에너지 무역 및 연결	- 국경 간 전력 무역 또는 에너지 연결 강화를 위해 협력	○	X	X
청정 에너지·탈탄소화	- 청정에너지 개발 및 사용 촉진을 위한 협력	○	○	△
	- 수소에너지에 대한 협력	○	X	
	- 에너지 효율화	X	○	
	-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협력	X	○	
운송	- 항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SAF 생산 및 이용 가능성 증대, 상업적 보급 등에서 협력	○	X	X
	-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개발 및 이행, 연료의 효율화, 인프라 요건 등에서 협력	○	○	
농업·임업	-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적인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을 위해 협력	○	X	X
	- 산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협력	X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 작성	○	○	X
	- 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 촉진을 위해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	○	
	- 표준·기술규제·적합성 평가 절차의 명확성 및 상호운용성 제공	○	X	
	- 환경 상품에 대한 정부 조달 촉진	○	X	
탄소시장	- 탄소시장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협력	○	○	○

분야	세부 구성 요소	호-싱	EU-뉴	한-몽
금융	-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또는 솔루션 개발, 기후 관련 재무 공개 등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협력	○	X	X
기술협력	-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관 간의 파트너십 체결	○	X	○
	- CCUS 기술 관련 협력	○	X	X
역량 강화/ 공정 전환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는 제공	○	○	X
	- 인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	○	X	○
	- ILO 핵심 협약의 노동권 증진	X	○	X
	- 사회적 대화 촉진	X	○	X
협력 지원 활동	- 이해관계자의 참여	○	○	X
	- 비즈니스 매칭, 세미나 개최, 컨퍼런스 참여 등 정부 간 협력 또는 민간 협력 촉진	○	X	○

자료: 저자 작성.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상협력

■ 본 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특화된 통상협력을 다룬 협정으로 스위스 및 일본의 사례와 우리의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구축 시 탄소시장 및 국제감축 관련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봄.

■ 파리협정 제6.2조¹⁵⁾에 근거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ITMO)¹⁶⁾을 국가결정기여(NDC)¹⁷⁾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은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상협력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있음.

- 국제감축사업은 국가 간 양자협정을 기반으로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고, 정부는 민간의 감축실적을 확보하여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음.¹⁸⁾

■ 한국도 정부 간 국제감축 협력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분¹⁹⁾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 베트남, 몽골, 가봉, 우즈베키스탄, UAE, 모로코, 페루 등 7개국과 기후변화 협력협정을 체결함.

15) 6.2. 국가결정기여를 위하여 당사자가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의 사용을 수반하는 협력적 접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등에서 환경적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특히 이중계산의 방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계산을 적용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검색일: 2024. 7. 17.).

16)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ITMO)는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 또는 국외감축분을 말함.

17) 국가가 결정한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임.

18)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한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의미함. 산업통상자원부(2022),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 p. 1.

19) 우리나라 2030 NDC에서 국제감축 목표량은 총감축목표(2.91억 톤)의 약 12.9%인 3,750만 톤임.

1) 한국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한국] 한국의 기후변화 협력 협정문은 파리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NDC를 이행하기 위한 양자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체결된 7개국 모두 협정문 구성과 조문 내용이 유사함.
 - 2023년 6월 체결한 한국-몽골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²⁰⁾을 토대로 한국의 기후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저탄소전환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력 분야와 활동을 명시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제거, 측정·보고·검증(MRV)역량 배양, 기후기술 개발/이전 등의 협력 분야와 기후변화 관련 인적교류, NDC에 활용 가능한 감축실적 발굴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사업 증진 등의 협력활동을 제시
 - 감축실적의 NDC 활용 시 상응조정²¹⁾의 필요성과 NDC를 위해 사용되는 감축결과를 다른 국제감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감축량 배분에 있어 감축사업 참여자의 기여도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승인, 감축실적 배분/이전, 모니터링, 검증, 등록, 상응조정, 국제사회 보고 등 파리협정 시장 메커니즘 소위원회의 기능을 제시함.

2) 스위스의 양자 간 기후협정

- 스위스는 파리협정에 따른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리협정 6.2조의 활용과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을 사용한 해외 탄소저장 활용 협력을 위해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 2024년 1월 기준 13개국²²⁾과 양자 간 기후협정을 체결함.
 - 스위스의 양자 간 기후협정 협정문은 NDC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감축결과의 이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확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감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스위스가 체결한 기후 양자협정의 첫 사례인 스위스-페루 간 기후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봄.
- 스위스-페루 기후협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건전성, 승인 및 승인양식, 검증, 이전 인증, 등록, 상응조정, 보고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환경건전성에 대한 기준과 상응조정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환경건전성' 조항은 양도 및 사용이 승인된 감축결과의 환경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감축활동이 세계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고, 각 당사국의 저탄소배출 전략에 부합해야 하며, 2050년까지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원자력에 기반한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20) 외교부,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검색일: 2024. 1. 8.).

21) 상응조정이란 감축결과물의 국가 간 이전 과정에서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산정방식(robust accounting)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상응조정은 ITMO가 발행·이전·사용되는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산정 과정으로, 감축된 결과물을 발행하여 이전한 당사국은 이전량만큼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더하고, 반대로 획득하여 NDC에 사용한 당사국은 사용량만큼을 차감하여 동일한 감축결과물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UNFCCC(2019), para 9; 박순철, 오채운(2020), 「파리협정 제6조의 상응조정 방식에 관한 연구」, p. 165).

22)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https://www.bafu.admin.ch/bafu/en/home.html>(검색일: 2024. 1. 8.).

- ‘승인’ 조항에서는 NDC 또는 다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실적의 국제 이전과 사용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각 당사국의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승인 양식에는 감축활동의 식별, 적용기준, 모니터링과 검증보고서에 대한 요건, ITMO 사용이 승인되는 NDC 기간에 대한 정의, 이전 및 사용이 승인된 감축결과 금액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
- ‘모니터링, 검증 및 평가’ 조항은 ITMO가 발생한 각 감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과 이전 요건을 규정함.
 - 이전 요건에는 △다른 국내·국제 시스템 또는 목표에 따라 감축결과를 이중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 △승인 내용과 불일치하는 증거가 없을 것, △감축활동 이행에서 이전자(transferor)의 인권 또는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을 것 등을 포함함.
- 특히 스위스 협정문에는 상응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상응조정’ 조항에서는 이전된 감축결과와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이전된 모든 감축실적을 더하고, 당사국의 NDC를 위해 사용된 감축실적은 차감함으로써 조정한다고 명시
 - 상응조정은 NDC가 적용되는 분야 및 온실가스로의 배출/제거에 적용
- 각 당사국은 매년 파리협정 사무국에 ITMO 승인, 이전, 보유, 취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NDC 목표 달성 평가를 위한 상응조정 적용 정보는 격년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당사국 간 분쟁은 외교 채널을 통한 직접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제4.2조23)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협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인증을 중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표 2. 한국-몽골, 스위스-페루, 일본-스리랑카 기후협정문(협력각서) 조항

한국-몽골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스위스-페루 (양자 간 기후협정)	일본-스리랑카 (저탄소 성장 파트너십을 위한 JCM 양자 협력각서)
1조. 목적	1조. 일반적 정의	1. 목적
2조. 협력 분야	2조. 목적	2. 협의
3조. 협력 활동	3조. 환경건전성	3. JCM
4조.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	4조. 지속가능한 개발	4. 공동위원회
5조. 과학 및 기술 협력	5조. 승인	5. 상응조정
6조. 공동위원회	6조. 승인양식	6. 환경건전성
7조.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7조. 모니터링, 검증, 평가	7. 이중 계산 방지
8조. 보충 약정	8조. 이전 인증	8.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
9조. 비용 및 지원	9조. 등록	9. JCM 이행
10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0조. 상응조정	10. 온실가스 감축 우선순위
11조. 분쟁해결	11조. 연례 보고	11. 적용 지원
12조. 발효	12조. 격년 보고	12. 기간
13조. 개정	13조. 국제 기후재원과의 이중 계산 방지	13. 분쟁해결
14조. 종료	14조. 관할 당국	14. 수정
	15조. 부패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23) 4.2. 각 당사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차기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한다. 당사자는 그러한 국가결정기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적 완화 조치를 추구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검색일: 2024. 7. 17.).

	방지	
	16조. 발효	
	17조. 개정	
	18조. 분쟁해결	
	19조. 계약 폐기	
	20조. 이전 인증 중지	
	21조. 종료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일본의 저탄소 성장 파트너십

-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협정은 일본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모델인 공동감축메커니즘(JCM)을 통해 생산된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상대국과의 저탄소성장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각서임.

 - 2024년 7월 기준 29개국²⁴⁾과 체결함.
 - 공동감축메커니즘(JCM: Joint Credit Mechanism)은 탈탄소화 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및 인프라의 보급과 완화조치의 실행을 촉진하며, 협정 상대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NDC 달성에 활용함.
- JCM 협력각서는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JCM의 운영체계와 이행, 공동위원회 역할이 규정되어 있고, 협정 상대국에 대한 적응지원을 포함함.

 - 협력각서에는 JCM을 운영하기 위해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설립을 명시하고 있음.
 - 공동위원회는 JCM 이행을 위한 규칙,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 방법론, 제3자 기구 지정요건, JCM 프로젝트의 검증 등 JCM 이행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주관함.
 - JCM에 따른 감축사업에서 확인된 감축실적은 파리협정에 따라 NDC에 사용할 수 있음을 상호 인정하고, 상응조정을 통한 이중 계산 방지를 명시함.
 -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JCM에 등록된 감축 프로젝트를 다른 국제감축 메커니즘으로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
 - 양국 정부는 JCM 이행에 필요한 재정,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일본정부는 협정 상대국에 대한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JCM 이행을 촉진할 것을 명시함.
 - JCM은 초기에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non-tradable) 크레딧 메커니즘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거래 가능한(tradable) 크레딧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규정함.
 - JCM의 목표는 JCM이 거래 가능한 크레딧 메커니즘으로 전환된 후, 협정 상대국의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협력각서의 이행과 해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양국 정부가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함.

24)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https://www.jcm.go.jp/>(검색일: 2024. 8. 23.).

4) 협정 간 비교분석

■ 위에서 살펴본 한국, 스위스, 일본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지만, 각국마다 국제감축 메커니즘의 운영방식이 달라 협정의 구성요소나 이행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위 세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목적과 협정문의 구성요소, 감축실적 이행방식 등을 중심으로 차이를 비교함.

표 3. 한국, 스위스, 일본의 기후협정(각서) 비교

구분	한국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스위스의 기후협정	일본의 저탄소 성장 파트너십을 위한 JCM 협력각서
목적	- ITMO 확보, NDC에 활용 - 협정 당사국의 역량 강화와 저탄소전환 촉진	- ITMO 확보, NDC에 활용 - 감축결과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협정 상대국에 저탄소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확산, 투자 증진 - ITMO 확보, NDC에 활용
구성요소	운영주체	- 공동위원회	- 양국 정부
	공동위원회	- 설립	- 설립 안 함
	환경건전성 기준	- 없음	- 있음
	승인	- 별도 조항 없음	- 별도 조항을 통해 승인 절차, 요건, 통보 등을 제시
	이전 인증 중지 조항	- 없음	- 있음
	분쟁해결	- 당사자 간 협의	- 외교 채널을 통한 당사국 간 직접 협상
	부패방지 조항	- 없음	- 있음
	보고	- 매년 보고, 격년 투명성 보고 - 보고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음	- 매년 보고, 격년 투명성 보고 - 구체적인 보고 내용 제시
	적응 지원	- 협력활동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 제공	- 언급 없음
과학·기술 협력	- 양국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노력	- 관련 조항 없음	
이행방식	감축실적 확보 메커니즘	- 투자/구매 방식	- 공동감축메커니즘(JCM)
	감축실적 배분	- 참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참여자 간 합의로 결정	- 배분 필요 없음
	상응조정 방식	- 상응조정 적용만 언급	- 상응조정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자료: 저자 작성.

■ **[목적]** 궁극적으로 한국, 스위스, 일본 모두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결과를 NDC에 사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JCM을 통해 자국의 저탄소기술이나 제품 등을 협정 상대국에 수출, 확산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은 협력각서에 협정 상대국의 저탄소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등의 투자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JCM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 스위스의 협정체결 목적은 협정 상대국과의 계약을 통해 정부가 감축량을 구매하여 NDC 목표달성에 사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한국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제거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협정 당사국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함.

■ **[구성요소]** 스위스의 협정문은 한국이나 일본의 협정문에 비해 환경건전성의 기준, 승인 절차와 요건, 이전 인증 중지,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대부분의 조항들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됨.

- 한국의 기후변화 협력협정문에서는 ITMO 관련 감축활동에 대한 환경건전성, 승인, 이전 인증, 검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 국제감축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국과 협상 중인 부속문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의 경우 여러 조항이 한 조항에 묶여 있지 않고 각각의 조항으로 구성된 데 비해 한국은 협정문 1개 조항(제4조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 내에 환경건전성, 상응조정, 배분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운영주체] 한국과 일본은 양자 간 국제감축사업의 운영주체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스위스의 경우는 양국 정부가 운영주체임.
 - 스위스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양국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함(스위스는 Klik재단²⁵⁾에서 사업신청, 구매계약 등 양자협력사업 추진).
- [환경건전성] 한국과 일본의 협정문에서는 환경건전성을 증진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는데 반해, 스위스 협정문에서는 환경건전성 보장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스위스는 감축활동 기준으로 감축실적이 전 세계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며, 각 당사국의 저배출 전략에 부합해야 하고, 원자력에 기반한 활동은 포함하지 않으며, 탄소누출 위험을 완화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함.
- [승인] 한국과 일본의 협정문은 감축결과의 이전 및 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 조항이 없으나, 스위스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 조항에 승인 절차와 요건, 통보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특히 스위스는 승인양식에 대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여, 감축결과가 발생한 감축활동의 식별, 모니터링 및 검증보고서에 적용된 표준/방법론과 요건에 대한 정의, ITMO 사용이 승인되는 NDC 기간에 대한 정의, 이전 및 사용이 확인된 감축결과의 총누적 최대금액 등 승인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함.
- [이전 인증 중지] 스위스 협정에만 이전 인증²⁶⁾ 중지 조항이 있음. 동 조항은 파리협정이나 이행협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TMO 이전에 대한 인증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임. 이는 상응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유용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25) 스위스 석유협회는 스위스 CO₂ 법안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응하고자 2012년 Klik재단을 설립함. 석유 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운영 재원을 충당하며, 2021~30년까지 국의 감축분 5,400만 tCO₂eq를 확보할 계획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 「한-베트남 양자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 전략 연구」, p. 34.

26) 이전 인증이란 이전을 확인하기 위해 레지스트리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분쟁해결] 한국, 스위스, 일본의 협정문 모두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당사국 간 협이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세 개 협정문 모두 유사함.
- [부패방지] 스위스 협정문에는 한국, 일본 협정문과는 달리 부패방지 조항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있음. 동 조항에서는 협정에 따른 승인이나 이전 인증을 받기 위해 직간접적인 모든 종류의 제안, 선물, 지불, 보수, 이익 등은 불법 또는 부패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우 이전 인증을 증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보고] 일본 협정문에는 보고 조항이 없고, 한국 협정문은 보고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스위스 협정문의 보고 조항에서는 연례보고와 격년 투명성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스위스의 연례보고에는 이전, 취득, 보유, 취소 및 사용된 감축결과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사용 목적, ITMO 식별 정보 등이 포함되며, 격년 투명성보고서에는 최초로 이전된 감축결과와 사용된 감축결과에 대한 연례정보, 연간 배출잔액, 이전된 감축실적 정보 등이 포함됨.
 - 한국 협정문에서는 시장 메커니즘 공동소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조항 안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최초보고서, 연례정보, 일반정보,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격년 투명성보고서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과 양식을 공동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합의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적응지원] 일본과 한국은 협정 상대국인 개도국의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하고,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함. 스위스의 협정문은 협정 상대국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음.
-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협력 조항은 한국 협정문에만 있으며, 협력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제2조 협력 분야 조항에 이미 기후 관련 과학·기술 협력과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과학·기술 협력(제5조)'이라는 별도 조항을 마련함.

■ **[이행방식]** 한국은 국제감축사업을 주로 투자방식(구매방식은 보완적), 스위스는 구매방식, 일본은 JCM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감축실적 확보 메커니즘] 한국의 국제감축사업은 국제감축시장 메커니즘(파리협정 제6.2조의 협력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해외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스위스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ITMO를 자국의 감축량으로 활용하지만, 이때 감축량은 정부가 전부 구매하는 방식을 따름. 스위스는 ITMO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구매해 NDC로 활용
 - 일본은 자체 국제감축 모델인 JCM을 통해 협정 상대국(개도국)에 저탄소기술, 제품, 인프라 등의 보급 및 투자를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발행된 크레딧(감축실적)을 배분해 자국 NDC로 활용
- [감축실적 배분] 일본은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은 협의를 통해 배분하며, 한국의 감축실적 배분은 참여자의 기여도(투자 비율 등)를 고려하여 참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고 명시함.
 - 스위스는 감축분을 모두 정부가 구매하므로 국가 간 배분은 필요하지 않음.
- [상응조정] 스위스는 한국, 일본과 달리 협정문에 별도의 상응조정 조항을 마련해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응조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상응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상응조정 적용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상응조정 방식은 부재

3.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추진을 위한 시사점

■ [그린경제협정의 중요성] 그린경제협정은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무역조치와 통상협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협정임.

- 그린경제협정은 무역협정이 포괄적 시장개방 중심에서 분야별 협력 중심의 통상협정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협정의 구속력과 협력의 효과성, 국내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함.
- 그린경제협정을 통한 협력전략은 일방적 기후통상 관련 조치에 비해 단기적 영향은 가시적이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관련 자원, 기술, 시장을 확보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참여국 간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그린전환의 비용을 낮추고, 탄소누출을 최소화하면 서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그린경제협정을 통해서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자극하는 인센티브나 규범의 조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면서 전통적인 FTA와 같은 교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린전환 시대에 핵심자원, 기후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그린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혁신과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한국의 FTA 추진전략에도 부합함.

■ 그린경제협정이 진화하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의 기후통상정책을 설계해야 함.

- 파리협정 체제가 안정화되고 탄소중립이 법제화되면서 통상협정에서도 파리협정의 이행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양자 관계를 넘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사이에 복수국 간 클럽의 형태로까지 논의가 진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한국의 참여요청이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낮은 MOU와 파트너십, 범위가 제한적인 기후변화 협력에 한정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임.
-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력, 경제와 환경의 조화, 포용적 지속가능한 이슈의 증대라는 환경 변화하에 주도적인 기후통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분석 결과, 최근의 그린경제협정은 전통적인 시장개방 논의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슈 중심으로 논의가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줌.
 - 특히 시장개방 논의에 더하여, 협력을 강조하고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함.
 -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린전환 과정의 포용성, 민간 참여의 확대를 강조함.

■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은 궁극적으로는 환경보호와 더불어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무역과 투자 촉진,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협력활동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되 민간과 정책적 수요에 맞게 구성요소를 선별·모듈화하여,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그린경제협정은 환경 분야에 특화된 분야별 협정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이 사회 전반의 생산과 소비 방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정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다양한 주제의 규범들을 포괄하게 됨.
-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그린경제협정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 맞게 구성한 후 협상 상대국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외부적으로 압력에 따른 수동적 협력보다는 우리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협력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해야 함.
- 협정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주요 협력 요소별 이니셔티브나 협력 프로그램 등 구체적 이행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개방과 관련된 양허를 제외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분야별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작업반을 설립하고 우선순위 협력 분야 선정 및 협력활동 발굴, 전문가 의견 교환 및 경험 공유,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진행, 기업 매칭, 보조금 지급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 협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거나 파리협정의 심각한 위반 시 무역 제재 부과를 허용하여 더 강력한 이행력을 담보하는 경우도 등장하는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간 참여 유도, 인력 개발 및 역량 강화, 그린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과 같은 포용적인 접근도 고려해야 함.

■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에서 국제감축 협력 논의 시 ITMO 확보뿐 아니라 당사국 간 협력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우리의 기후기술 확산 및 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제감축 관련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한 스위스의 협정문이나 자체적인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협정문 등 주요 국가들의 협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형 그린경제협정문 설계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우리 기후기술의 확산 및 협력을 위해 한국형 그린경제협정에는 협정 상대국에 대한 저탄소기술 협력 및 보급 촉진, 인프라 지원과 투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파리협정 이후 개도국 역시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도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간 양자협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이 개도국인 협정 상대국에 대한 기술 및 투자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기술의 공동 개발과 확산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기후변화 협력협정에 이미 규정된 '과학·기술 협력' 조항을 확장해 과학기술협력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린수소, 무탄소에너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과 같은 감축방법론 개발 및 협력에 관한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EP**

부록

부록 표 1. 호주-싱가포르 GEA의 협력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추진 이니셔티브

협력 분야	주요 내용	추진 이니셔티브
무역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작성 및 접근성 개선 - 탈탄소화와 그린경제 투자 촉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 - 비관세장벽 파악 및 해소 메커니즘 - 무역원활화, 디지털 검증 플랫폼 - 지속가능한 정부 조달 - 지속가능한 농업 및 푸드 시스템
표준 및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경제 관련 글로벌 표준 채택 및 개발 독려 -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 촉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과 적합성 관련 공동작업
그린 및 전환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전환 금융 관련 규제와 정책 가이드라인, 금융 솔루션 제시 -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및 전환 금융에 대한 공동성명서
탄소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탄소시장의 개발 지원 - 기후행동 지원(민간·기관 등) - 저탄소 배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강화 	-
청정 에너지, 탈탄소화 및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간 전력 거래 촉진 - 해상 전력 인프라 개발과 안전한 운송 촉진 - UNFCCC와 합치되는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회계 개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간 전력 교역을 위한 구조 개발 - 그린해운 협력 - 지속가능한 항공 협력 - CSIRO-A*STAR 공동연구 작업
친환경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기술 관련 인력 개발과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싱가포르 그린기술 회의
참여 및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부문의 기술과 전문지식 활용 -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Green Co-Innovation Program - 그린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MOU - 환경 라벨링 및 지속가능성 체계 협력 조성 - 그린경제의 통계 측정

자료: Singapore Australia Green Economy Agreement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2. EU-뉴질랜드 FTA 제19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다자환경협정 및 국제 환경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과 환경정책 간의 상호 지원성(mutual supportiveness) 강화 - 다자 간 환경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의무화 및 양국의 관련 상황 정보 교환 - 국제 포럼에서의 무역 관련 환경 정책 및 조치에 협력 강화 - 이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역과 환경에 대한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 및 조치 ②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니셔티브 ③ 환경 상품과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 ④ 환경법과 표준, 무역과 투자 관련 법이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 ⑤ MEA 이행
무역 및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FCCC와 파리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의무화 - 파리협정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자제 의무 - 이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역, 기후 정책 및 조치의 상호 지원 촉진 ② 기후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 제거 촉진 ③ 배출권 거래와 국제 탄소시장의 개발에서 환경 건전성을 촉진 - 양자 간·지역 간·제3국 간·국제 포럼에서 기후변화 정책 및 조치의 무역 관련 부문 협력 강화 - 이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파리협정의 이행에 대한 정책적 대화 및 협력 ② 배출권 거래제, 탄소 가격제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정책 및 기술 교환 ③ 국제교역에서 선박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의 개발과 채택 ④ 오존층 파괴물질의 단계적 철폐와 수소불화탄소 감축 지원
무역 및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 보조금의 시장 왜곡 인정 - 보조금 개혁 및 감축목표 공유 - WTO 중심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무역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를 작성 및 교역과 투자 촉진 - 이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식 제고활동과 정보 및 공공 교육 캠페인 ② 가용한 최상의 기술 배포 ③ 중소기업 지원 ④ 비관세장벽 해소 ⑤ 국제 표준 참조
과학 및 기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노동 보호조치 시 과학기술 정보 및 국제 표준 고려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에게 무역·투자·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

자료: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New Zealand의 제19장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록 표 3. 한-몽골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협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인 협력 분야(특히 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폐기물 관리, 농업 및 산림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및 제거 -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자발적 협력의 활용과 국가 인벤토리의 측정·보고·검증(MRV)에 관한 역량 배양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 기후 관련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과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
협력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배양의 연수 기회 제공, 기초 및 통합 연구의 수행, 과학·기술 성과 및 첨단 기술의 도입 등 기후변화 전문가, 연구원, 학자 및 공무원 간 교류 - 파리협정 제6조에 규정된 자발적 협력, MRV, 적응 계획 및 전략, 안전·기술 규제 등에서의 역량 강화 - NDC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온실가스 감축결과로 이어지는 공공 및 민간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 진흥 - 조기경보 시스템 등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응 노력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된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감축 결과의 사용을 포함하여 자발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 -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본 협정 제6조의 공동위원회가 승인한 감축결과는 각 당사국의 NDC 이행 및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리협정 제6조 2항에서 규정된 상응 조정이 이루어짐 -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따라 각 당사국의 NDC에 사용된 감축결과는 다른 국제적 감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 감축 결과의 배분은 투자 비용과 같은 자발적 협력에 대한 참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참여자 간 합의로 결정
과학·기술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기반으로 NDC 이행을 할 수 있으며, 제3조의 규정된 활동에 과학·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노력

자료: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토대로 저자 작성.